

1998. 3.

## 충주도시계획사업결정(변경)안심사보고서

-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 -

산업건설위원회

# 충주 도시 계획 사업 결정 (변경) 안심 사 보고서

- 연수구 토지구획정리 -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8. 3. 18. 충주시장

나. 회부일자 : 1998. 3. 18.

다. 상정일자 : 제31회 충주시의회(임시회)

○ 제1차 위원회 ('98. 3. 24.)

## 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지역계획과장)

### 가. 제안이유

○ 주택건설의 일환 및 경제 발전과 고도성장을 거듭하는 충주시민의 주택선호도의 변화에 부응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무처리 규정등에서 규정하는 범주내에서 공동주택을 확보하여 일부구획도로의 기능을 보조 간선도로의 기능으로 기능및 폭원을 확보하고 신시가지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함

### 나. 주요골자

위치	면적 (m <sup>2</sup> )		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
충주시 연수동 395번지 일원	526,010	-	526,010	면적 변경없이 세부시설 변경

※ 도시계획시설변경(결정)조서 별첨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사업은 면적의 변경없이 세부시설변경, 공동주택 위치변경, 노포확장, 노선변경 및 노선단축, 학교시설폐지, 주차장 위치변경, 어린이공원 위치변경 등의 내용으로서 변경하는 것이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목적에 합당한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질의답변 요지

#### { 질의 }

- 사업자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음. 이번 도시계획을 변경하면 공사가 바로 시작되는지, 또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야 하는지?

#### ▣ 답변

- 구획정리사업 변경과 관계없이 새로운 사업자 선정시 즉시 공사계획이며 공사진척과 관계없이 도시계획은 변경되어야 함.

#### { 질의 }

- 연수지구택지개발조합과 사전협의가 되었는지?

#### ▣ 답변

- 택지개발 조합에서 신청한 사항임.

#### { 질의 }

- 교육청을 계획지구내 학교부지가 폐지되는 곳으로 이전하고 현교육청 부지를 시에서 매입활용 계획은?

☞ 답 변

- 교육청 신축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부지 매입은 어려움.

{ 질 의 }

- 부도 시공업체의 보증업체가 인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인지?

☞ 답 변

- 보증업체가 아니고 새로운 시공업체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.

{ 질 의 }

- 도로노폭 등은 변경되어야 하나 학교용지 폐지는 반대하며 교육청 사본요구.

☞ 답 변

- 당초 도시계획에는 학교용지가 필요하였으나 교육청에서 재검토 하였는바 고등학교 신설이 타당하지 않아 용지구입 포기(포기공문서 제시함.)

{ 질 의 }

- 택지개발시 용도별로 지정하는 것이 있는지?

☞ 답 변

- 도시계획법에 용도별 비율은 있으나 학교용지는 없음.

{ 질 의 }

- 어린이공원 옆에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지?

☞ 답 변

- 중앙공원처럼 공원내 주차장이 아니며 별도의 주차시설임.

## 5. 심사결과

### ○ 의견서 채택

- 의견서 별첨

# 의 견 서

□ 건 명 : 충주도시계획사업(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)결정(변경)의건

□ 의안번호 : 541호

□ 도시계획사업결정 : 충청북도 고시 1992 - 160호('92. 10. 12.)

□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7조의2, 시행규칙 3조의2

## □ 의 견

- 연수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1992. 10. 12. 충청북도 고시 1992 - 160호로 충주시 연수동 395번지 일원 526,010m<sup>2</sup>의 면적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결정 되었으며
- 1995. 4. 8. 충청북도 고시 1995 - 38호에 의거 충주연수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이 지적고시 되어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.
- 1997. 9. 24. 충주연수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으로부터 사업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본 사업이 면적의 변경없이 세부시설변경, 공동주택 위치변경, 노폭확장, 노선변경 및 노선단축, 학교시설 폐지, 주차장 위치변경, 어린이공원 위치변경 등의 내용으로 토지구획사업 사무 처리규정 등에서 구성하는 범주내에서 공동주택을 확보하여 일부 구획도로의 기능 및 폭원을 확충하고 신시가지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충주도시계획사업(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)결정변경안대로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봄.

1998. 3. 24.

산업건설위원회